



제337회 임시회  
2015.01.28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#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15년 01월 19일
- 회부일자: 2015년 01월 20일

### 3. 제안이유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(2015. 2. 28.까지) 도래에 따라 책정된 한시정원을  
삭제하고자 함

### 4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인 방과후학교지원단의 존속기한(2015. 2. 28.까지) 도래에  
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함

- 1)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 개정: 방과후학교지원단 행정4급 △1
- 2)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안 제5조, 별표 4)

현 행							개 정 후							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							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							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	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	
본 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	본 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	
				1					5급	1				
		교육행정	5급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			6급	1				
			6급	1					7급	1				
			7급	1										
교육지원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	교육지원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	
합계			<u>22</u>				합계			<u>21</u>				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<sup>1)</sup>되어 운영되던 방과후학교 지원단의 폐지시한(2015. 2. 28.까지)이 도래됨에 따라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--

1)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(2012. 12. 12) 의결, 2012. 12. 28. 시행

## 관 계 법 령 발 췌

###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**제15조(정원의 관리)**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**제18조(한시정원)**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**제2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
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
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
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